

## 보 고 사 항

### □ 제8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

○ 제8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- '99. 11. 12

(화순군의회 공고 제1999-10호)

<공고내용>

- 집회일시 : '99. 11. 19 (金) 10:00

- 집회장소 : 화순군의회 본회의장

### □ 제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의결된 안건 처리현황

○ '99년도 제3회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- '99. 10. 26 집행부 이송

○ 고 시 일 자 : '99. 10. 26

○ 고 시 번 호 : 화순군고시 1999 - 45호

○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- '99. 10. 30 집행부 이송

○ 공 포 일 자 : '99. 11. 18

○ 공 포 번 호 : 화순군조례 1614호

○ 화순군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등설치허가에관한조례

- '99. 10. 26 집행부 이송

○ 공 포 일 자 : '99. 11. 18

○ 공 포 번 호 : 화순군조례 1615호

○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- '99. 10. 26 집행부 이송

○ 공 포 일 자 : '99. 11. 18

○ 공 포 번 호 : 화순군조례 1616호

## □ 각종 의안 발의상황 보고

- 제8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- '99. 11. 12 의원발의
    - 발 의 자 : 문팔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외 4
    - 회 기 : '99. 11. 19 ~ 11. 24 (6일간)
  -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- '99. 11. 12 의원발의
    - 발 의 자 : 문팔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외 4
    - 출석요구내용 : 별 첨
  -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- '99. 11. 10 군수제출
    - 제안이유
      -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신설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종합 지원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, 세제지원 방안을 확대코자 함. 명칭 및 과 단위 기능 등을 조정하기 위함.
    - 주요골자
      - 과밀억제 권역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'취득한 날로부터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를 5년 동안은 전액 면제, 그 다음 3년 동안은 50% 경감
      - 감면시한 : 기업이전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2002년말까지 한시 적용
  - ※ '99. 11. 10 총무위원회로 회부
- 화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- '99. 11. 10 군수제출
  - 제안이유
    - 정부의 행정규제개혁에 부응하고 주민과 판매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규제조항을 완화코자 함.
  - 주요골자
    - 화순군수입증지 판매인에 대한 자격요건 완화 (안 제7조, 8조)

- 판매인 지정신청시 첨부서류인 인감증명, 신원증명, 위치도 첨부를 폐지  
(안 제9조 및 별지 제1호 서식)
- 판매인 명의변경 사항 신고시 군수 또는 읍면장 승인사항  
(안 제11조)

※ '99. 11. 10. 총무위원회로 회부

○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- '99. 11. 17 군수제출

○ 제안이유

- 장학생 자격기준이 고등학생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생은 전학년 학생수의 100분의 20이내이며,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은 100분의 5 이내로 되어 있어 인문계와 실업계의 학교간 형평이 맞지 않아 이를 삭제함으로써 서로의 평등한 자격을 유지하고자 함.

○ 주요골자

- '단,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은 100분의 5이내'를 삭제  
(안 제12조 1항)

※ '99. 11. 17. 총무위원회로 회부

○ 화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- '99. 11. 17 군수제출

○ 제안이유

- 중앙정부의 명칭변경과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위원 명칭도 현실에 맞게 자구수정 하고자 함.

○ 주요골자

- '제8332부대 5대대장'을 '제6753부대 6대대장'으로 개정  
(안 제3조 2항)
- '국가안전기획부' 을 '국가정보원'으로 개정 (안 제3조 2항)
- '내무과장' 을 '총무과장' 으로 개정 (안 제3조 3항)
- '민방위담당간사 : 민방위재난관리과장' 은 삭제 (안 제3조 3항)
- '문화공보실장' 을 '문화관광과장' 으로 개정 (안 제3조 3항)

- '부읍·면장' 을 '면장' 으로 개정 (안 제5조 ①항)
- '부읍·면장' 을 '면장' 으로 개정 (안 제5조 ②항)

※ '99. 11. 17. 총무위원회로 회부

○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- '99. 11. 17 군수제출

○ 제안이유

- IMF이후 급증하고 있는 복지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, 재직중인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정부가 읍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을 승인함에 따라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별정직에서 제외코자 함.
- 구조조정 계획의 변경에 따라 달라진 별정직 적용범위의 일부를 개정코자 함.

○ 주요골자

- 별정직 임용 범위의 변경 (안 제2조 제3항)
  - 사회복지전문요원 → '삭제'
  - 가정복지담당 → 여성복지담당

※ '99. 11. 17. 총무위원회로 회부

○ 화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- '99. 11. 17 군수제출

○ 제안이유

- IMF이후 급증하고 있는 복지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, 금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('99. 9. 7 공포)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일선 읍면동의 복지분야 인력을 확충·강화함과 동시에, 재직중인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정부에서 승인한 일반직 사회복지정원을 조례에 반영코자 함.
- 연차별 감축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매년 상반기에 확정해야 하는 「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」의 개정 내용을 반영

○ 주요골자

- 총 정원의 증가 : 2명 (596 → 599)

년 도 별	계	집행기관	의회사무과	비 고
2000 (7. 31까지)	643	627	16	집행기관+2
2001 (7. 31까지)	621	606	15	'
2002 (2001. 8. 1부터)	599	584	15	'

- 2. 3차년도 (2000년, 2001년) 직급별 정원은 매년 '7월 31일까지'에서 '6월 30일까지' 확정하는 것으로 변경

※ '99. 11. 17. 총무위원회로 회부

○ 광주시 도시계획 (개발제한구역) 변경 결정(안) - '99. 11. 17 군수제출

○ 제안이유

-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광주권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1973. 1. 17 (건설부 고시 제17호) 1읍 2개면 16개리, 41.7km<sup>2</sup>가 결정 고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.

- '98. 12. 24 헌법재판소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'99. 7. 23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, 이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취하고자 함.

○ 주요내용

-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지역
  -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 취락 지역

※ 해제범위 : 거주용 건축물(주택 및 부속사) 건축면적 합계의 5배 이내

위 치	필지수	면적(m <sup>2</sup> )	주택수	비 고
화순읍 도동리 1구	63	16,369	38	

※ '99. 11. 17. 산업·건설위원회로 회부

□ 제8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

1. 회기결정의 건
2.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
3.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4. 기타 일반안건